

문화재보존관리의 시책방향 (文化財保存管理의 施策方向)

鄭 泰 辰

<文化財管理局 文化財一課長>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文化財管理行改善을 위한 施策方向 |
| 2. 文化財 保存管理의 對象 | |
| 3. 文化財 保存管理 現況 | 5. 맺는말 |

1. 머리말

그 나라의 문화재(文化財)를 보존관리(保存管理)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재(文化財)를 보수(補修)하여 유지(維持) 관리(管理)하고 보호육성(保護育成)하는 유형(有形)의 차원(次元) 뿐만이 아니라 유구(悠久)한 민족정신(民族精神)을 계승발전(繼承發展)하여 새로운 문화창달(文化暢達)의 기틀을 마련하는 무형(無形)의 정신적(精神的) 활동(活動)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업무(業務)는 현대(現代)의 다양화(多樣化) 한 정부기능(政府機能)의 한 분야(分野)로 위치(位置)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民族)은 반만년(半萬年)의 역사(歷史)를 가진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서 항상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다. 세계인(世界人)의 염려와 기대 속에 열린 제24회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成功的)으로 치를 수 있었던 우리 민족(民族)의 역량을 운동경기장(運動競技場)의 시설(施設)이나 경기운영면(競技運營面)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보다도 더욱 돋보이게 하였던 것은 올림픽경기와 병행하여 8월 17일부터 한 달간 펼쳐진 문화예술축전행사(文化藝術祝典行事)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의 고유(固有)한 전통문화예술행사(傳統文化藝術行事)가 극장(劇場)에서, 놀이마당에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유감없이 펼쳐지고 고고유물전시(考古遺物展示)와 민속문화재전시(民俗文化財展示)가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각(各) 대학박물관(大學博物館) 등에서 열려 국내외인(國內外人)이 우리문화(文化)에 한껏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올림픽경기장(競技場)이 들어선 잠실벌은 기원전(紀元前) 백제(百濟)가 고대국가(古代國家)를 건설(建設)했던 2천년전(千年前)의 도읍지(都邑地)였음을 몽촌토성(夢村土城)에서 석촌동고분군(石村洞古墳群)에서 방이동고분군(芳夷洞古墳群)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며, 잘 정비(整備) 복원(復元)하여 전시장(展示場)까지 갖추어진 암사동선사주거지(岩寺洞先史住居地)에서는 서울이 6천년전(千年前)부터 우리 민족(民族)의 문화생활(文化生活)의 터전인 유서깊은 역사도시(歷史都市)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문화재(文化財)를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일은 시간(時間)을 초월하여 역사(歷史)를 규명하고 조상(祖上)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도 소중히 보존하여 그 가치(價値)를 빛나게 함으로써 국민(國民)의 교육자료화(教育資料化)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의 기본시책방향(基本施策方向)은 첫째, 문화재(文化財)의 원형(原形)의 보존정립(保存定立)을 기(期)하여 새로운 문화(文化)를 창달(暢達)하는 기반조성(基盤造成)에 기여(寄與)하고

둘째, 이 일을 위하여 문화유산(文化遺産)을 조사(調査) 연구(研究)하여 민족(民族)의 문화사(文化史)를 정확히 밝혀 나가며

셋째, 문화재(文化財)의 보급(普及) 선양활동(宣揚活動)을 강화(強化)하여 국민(國民)의 문화의식(文化意識)을 제고(提高)하는데 기여(寄與)할 것이며,

넷째,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위한 전문요원(專門要員)의 양성훈련(養成訓練)을 기(期)하여 문화재관리능력(文化財管理能力)을 배양(培養)하는 데 두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정부(政府)의 문화재보존관리업무(文化財保存管理業務)를 개관(概觀)하고 문화재관리실적(文化財管理實績)을 분석검토(分析檢討)해 봄으로써 문화재(文化財) 보존관리상(保存管理上)에 잠재(潛在)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問題點)을 도출하고 향후(向後)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소견(所見)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문화재 보존관리(文化財 保存管理)의 대상(對象)

문화재(文化財)란 용어(用語)는 큰 뜻으로 말하여 인류(人類)가 이룩한 모든 문화적(文化財) 소산(所産)으로서 보존(保存)할 만한 가치(價値)가 있는 유형·무형(有形·無形)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말한다. 즉 우리문화재(文化財)라 함은 우리조상(祖上)이 남긴 모든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말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인간집단(人間集團)이 생활(生活)하던 지역(地域)의 자연환경(自然環境), 그들이 가진 풍습(風習), 종교(宗教), 의식주(衣食住), 생활감정(生活感情), 산업기술(産業技術), 그들과 교섭하던 타지역(他地域)의 문화(文化)와의 접촉 등이 복합(複合)되어 나타나는 독창적(獨創的)인 문화(文化)의 표현체(表現體)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文化財)는 민족(民族)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자연환경(自然環境)에 의해서 생성(生成)되는 동·식물(動·植物) 또는 광물(鑛物), 생활습속(生活習俗)이나 생활감정(生活感情)으로 인(因)해 형성(形成)되는 음악(音樂)·무용(舞踊)·조형미술(造形美術)·생산기술(生産技術)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산(生産)되던 자리 즉 유적(遺跡)까지도 문화재(文化財)의 개념(概念)에 포함되는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종류(種類)는 성질별(性質別)로 분류(分類)하면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및 민속자료(民俗資料)의 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畫),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등 형체(形體)가 있는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을 말하며,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우리민족(民族)의 전통생활(傳統生活) 속에 전래(傳來)되어 오는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연극(演劇), 음악(音樂), 무용(舞踊), 공예기술(工藝技術) 등을 말하며, 기념물(記念物)은 패총(貝塚), 고분(古墳), 성(城), 궁(宮), 요지(窯址) 등 인위적(人爲的)인 사적지(事蹟地)로서 역사상(歷史上) 학술상(學術

上) 가치(價値)가 큰 것과 경승지(景勝地) 희귀(稀貴) 동·식물(動·植物), 광물(鑛物), 동굴(洞窟) 등으로서 예술상(藝術上), 학술상(學術上), 관상상(觀賞上) 가치(價値)가 큰 것을 말하며 민속자료(民俗資料)는 우리민족전래(民族傳來)의 생활양식(生活樣式)이나 풍습(風習)으로서 의식주(衣食住), 생업(生業), 신앙(信仰), 연중행사(年中行事) 및 이에 사용(使用)되는 의복(衣服), 기구(器具), 가옥(家屋) 등으로서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추이(推移)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문화재(文化財)를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 지정(指定) 여부(與否)로 분류(分類)하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와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지정(指定)되지 않은 문화재(文化財)라고 해서 보호대상(保護對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文化財)를 지정(指定) 주체(主體)에 따라 분류(分類)하면 국가(國家)에서 지정(指定)한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지정(指定)한 시·도지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시·군단위(市·郡單位) 이하(以下)의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는 없으나 이웃나라인 일본(日本)에는 시·정·촌(市·町·村)까지 문화재(文化財)를 지정(指定)하고 있다.

법적개념(法的概念)으로서의 문화재(文化財) 종류(種類)를 구체적(具體的)으로 분류(分類)하면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로서는 유형문화재중(有形文化財中)에서 국보·보물(國寶·寶物)을 지정(指定)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중(無形文化財中)에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지정(指定)하며, 기념물(記念物) 중에서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史蹟·名勝·天然記念物)을 지정(指定)할 수 있으며 민속자료(民俗資料) 중에서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를 지정(指定)할 수 있다.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서는 시·도유형문화재(市·道有形文化財), 시·도무형문화재(市·道無形文化財), 시·도기념물(市·道記念物), 시·도민속자료(市·道民俗資料)를 지정(指定)하고 있으며, 이외 전통건조물법(傳統建造物法)에 의한 전통건조물(傳統建造物)과 전통건조물보존지구(傳統建造物保存地區)를 지정(指定) 보호(保護)할 수 있다.

1988년 10월말(月末) 현재(現在)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2109건(件), 시·도지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 2339件,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1113件, 전통건조물(傳統建造物) 22件, 총(總) 5583件으로서 이는 1961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처음 발족(發足)할 때의 592件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增加)를 보았으나, 우리나라와 역사적(歷史的)으로나 지리적(地理的)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웃 일본(日本)의 88,751件(1987. 6월 현재)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양(量)이다. 일본 국지정문화재(日本國指定文化財) 통계(統計)에는 시정촌지정문화재(市町村指定文化財) 56,950件이 포함된 숫자이다.

우리나라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종류(種類) 현황(現況)은 다음 표와 같다.

지정문화재현황(指定文化財現況)

1988年 10月 31日 現在

種別	市·道別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全國	合計
國家指定	國寶	105	3				28	7	8	20	4	15	44	8			242
	寶物	252	13	14		7	85	46	31	66	69	81	218	72	1		955
	史蹟	54	4	3	2	1	44	3	9	28	21	19	83	50	1		322
	史蹟및名勝								1	1			3	1			6
	名勝							1				4	1	1			7
	天然記念物	12	8	1	1		16	23	20	11	18	38	42	33	18	29	270
	重要無形文化財	34	4		1	1	4	2		4	1	10	4	9	3	11	88
	(인간문화재)	67	9		3	1	10	3		6	1	13	4	25	3	34	179
	重要民俗資料	45		1		2	8	6	22	16	12	30	58	12	7		219
	(*小計*)	502	32	19	4	11	185	88	91	146	125	197	453	186	30	40	2,109
市道指定	市道有形文化財	67	22	23	9	12	113	104	129	122	119	138	224	247	9		1,338
	市道無形文化財		6	3	2	5	2	4		6	7	13	13	8	8		77
	市道記念物	7	30	7	1	13	103	61	78	68	71	96	70	85	36		726
	市道民俗資料	27		2			7	1	6	12	27	24	78	10	4		198
	(*小計*)	101	58	35	12	30	225	170	213	208	224	271	385	350	57		2,339
文化財資料		1	16	5	8	74	102	8	299	95	126	208	168	3		1,113	
傳統建造物	1					2	1		2	1		15				22	
(*合計*)	604	91	70	21	49	486	361	312	655	445	594	1,061	704	90	40	5,583	

학술적(學術的)으로 조사연구(調查研究)하여 평가(評價)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귀중(貴重)한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보호(保護)해야 할 대상(對象)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以外)에도 대단히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으나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1977년도(年度)에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조사정리(調查整理)하여 발간(發刊)한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 수록(收錄)된 11,670件을 들 수 있겠으나 이는 당시의 조사여건(調查與件)으로 보아 누락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 후에 발굴조사(發掘調査)된 수많은 문화유적(文化遺蹟)이 있는 점(點)과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點) 등의 미비(未備)한 점이 많아 시급히 보완(補完)되어야 할 과제중(課題中)의 하나이다.

3. 문화재(文化財) 보존관리(保存管理) 현황(現況)

가. 문화재 관리기구(文化財管理機構)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기구(文化財管理機構)는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인 문화재

관리국(文化財管理局)과 지방행정기관(地方行政機關)으로는 서울특별시(特別市) 문화담당관실(文化擔當官室), 직할시(直轄市) 및 도(道)에 문화공보담당관실(文化公報擔當官室), 시·군·구청(市·郡·區廳)에는 문화공보실(文化公報室) 및 총무과(總務課)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1961年 10月 2日 문교부(文敎部) 외국(外局)으로 설치(設置)되어 문화재관리업무(文化財管理業務)를 관장하기 이전(以前)에는 동(同) 업무(業務)를 문교부(文敎部) 교도과(敎導課) 및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舊皇室財産管理事務總局) 등에서 관장하였었다. 그 후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은 1968年 7月 24日 정부직제(政府職制) 개정(改正)으로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외국(外局)으로 개편(改編)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문화재관리국직제(文化財管理局職制)는 이사관(理事官)인 국장(局長) 산하에 1문화재기획관(文化財企劃官)(부이사관(副理事官)), 6개과(個課), 1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5개궁(個宮) 및 12개지구관리사무소(個地區管理事務所)에 정원(定員) 510명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으며, 그의 전문직원(專門職員) 13名 및 현업(現業)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원(非定規職員) 약 250名을 합하여 총(總) 760여명(餘名)에 달(達)한다. 그러나 다음의 기구(機構)와 인원현황표(人員現況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구(機構)中 문화재관리업무(文化財管理業務)에 직접관련(直接關聯)있는 문화재1과(文化財1課), 문화재2과(文化財2課), 문화재보수과(文化財補修課),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및 궁원관리과일부(宮苑管理課一部)이며 그 외는 궁·능관리(宮·陵管理) 등 현업(現業)에 종사하거나 일반관리업무(一般管理業務)를 담당(擔當)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직종별(職種別) 인원구성(人員構成)을 보면 전문직(專門職)으로서 학예직(學藝職), 건축(建築) 및 토목직(土木職), 보존과학직(保存科學職)은 83名에 불과한 실정(實情)이다. 이는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의 최고정책기관(最高定策機關)으로서 주객(主客)이 바뀐 느낌이다. 지방행정기관(地方行政機關)의 문화재전담요원(文化財專擔要員)은 시도(市都)에 7명내외(名內外), 시·군·구소(市·郡·區所)에 3명내외(名內外)에 불과하여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막중한 업무(業務)에 비(比)하여 기구(機構) 및 인원(人員)이 부족(不足)한 실정(實情)이다.

더구나 인적구성자체(人的構成自體)가 대부분(大部分) 빈번한 인사(人事)로 전문성(專門性)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參考)로 일본국(日本國)의 문화청기구표(文化廳機構表)와 도·도·현문화행정담당기구(都·道·縣文化財行政擔當機構)와 직원현황표(職員現況表)를 게재한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기구표(機構表)

局 長

(510)

文化財企劃官

(17)

文化財研究所長

(70)

庶務課	文化財 1 課	文化財 2 課	財産管理課	宮園管理課	文化財補修課	遺蹟調査研究室	美術工藝研究室	藝能民俗研究室	保存科學研究室
(28)	(22)	(21)	(17)	(32)	(40)	(40)	(9)	(5)	(16)

昌德宮事務所	昌慶宮事務所	德壽宮事務所	景福宮事務所	宗廟事務所	地區管理事務所
(42)	(42)	(24)	(25)	(24)	(106)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인원현황표(人員現況表)

<職級別>

職級別		區 分	定 員
別 定 職	5	級 相 當	1
	6	級 相 當	1
	小 計		2
別 定 職 또 는 一 般 職	學藝研究官 또는 3級相當		1
	學藝研究官 또는 4級相當		4
	學藝研究官 또는 5級相當		7
	學藝研究士 또는 6級相當		10
	學藝研究士 또는 7級相當		8
	學藝研究士 또는 8級相當		1
	學藝研究士 또는 9級相當		1
	小 計		32
一 般 職	2	級	1
	3	級	1
	4	級	8
	5	級	25
	6	級	57
	7	級	57
	8	級	10
	9	級	11
	小 計		170
計			204
技 能 職			21
雇 傭 職			285
合 計			510

<職種別>

職種別		區 分	定 員
別 定 職			2
別定職 또는 學藝研究職			32
小 計			34
行 政 職			87
司 書 職			1
農 林 職			27
建 築 職			40
土 木 職			6
物 理 職			1
化 工 職			2
電 氣 職			3
機 械 職			1
地 籍 職			2
小 計			170
技 能 職			21
雇 傭 職			285
計			510

일본국 문화청기구표(文化廳機構表)

(1987年度末 定員 758人)

文部大臣	(內閣府)	(31人)	總務課(10人)
	(183人)	長官房	會計課(10人)
	長	次長	文化普及課(12人)
		次長	藝術課(11人)
		次長	國語課(9人)
		次長	著作權課(14人)
		次長	企劃調査室
		次長	宗務課(9人)
		次長	文化財鑑査官(1人)
		次長	傳統文化課(24人)
		次長	普及助成室
		次長	記念物課(23人)
		次長	美術工藝課(5人)
	(施設等機關等)	(94人)	建造物課(19人)
	(575人)	文化財保護部	企劃官(1人)
			國立國語研究所(72人)
			東京國立博物館(153人)
			京都國立博物館(49人)
			內良國立博物館(39人)
			東京國立近代美術館(58人)
			京都國立近代美術館(1人)
			國立西洋美術館(33人)
			國立國際美術館(16人)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40人)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91人)
			- 日本藝術院(7人)
			國語審議會(委員 50人以內)
			著作權審議會(委員 20人以內)
			宗教法人審議會(委員 10人以上 15人以內)
			文化財保護審議會(委員 5人)

일본국지방문화행정담당기구현황(日本國地方文化行政擔當機構現況)

區 分	教 育 委 員 會	知 事 部 局
北海道 青森 岩手 宮城 秋田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保 護 課 文 化 課	生活文化課 縣民生活課 縣民生活課 企劃調整課
山形 福島 茨城 栃木 群馬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保 護 課	生活文化課 縣民生活課 生活文化課
埼玉 千葉 東京 神奈川 新潟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保 護 課 文 化 課 文 化 課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保 護 課 文化行政課	自治文化課 企劃部廣報縣民課 振興計劃室/文化事業課 文 化 室
富山 石川 福井 山梨 長野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企劃調整室 生活文化課 生活文化課
崎靜 愛知 三重 滋賀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化振興課	縣民生活課 總務部私學振興室 地方振興室
京都 大阪 兵庫 奈良 和歌山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保 護 課 文 化 財 保 護 課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課 社 會 教 育 科 文 化 財 保 護 課 文 化 財 課	文化藝術室 府民文化室 文 化 課 企劃部企劃文化課 文化振興課
鳥取 島根 岡山 廣島 山口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企劃廣報課 企 劃 課 縣 民 課
德島 香川 愛媛 高知 福岡	文 化 課 文化行政課 文化振興局 文化振興課 文 化 課	生活文化課
佐賀 長崎 熊本 大分 宮崎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文 化 課	環境文化企劃室
鹿兒島 沖繩	文 化 課 文 化 課	縣民生活課 文化振興課

政令指定都市文化行政擔當機構

區分	教育委員會	市長部局
札幌	社會教育部文化課	企劃調整局市民文化室
川崎	社會教育部文化課	企劃調整局文化局
横浜	社會教育課 文化財課	市民文化室 青少年課
名古屋	文化課	
京都		文化觀光局 計劃局 企劃課 風致課 文化課 文化財保護課
大阪	文化振興課	(公園局 庶務課 建設課)
神戸	市民文化課 文化財課	
廣島	管理課 社會教育課	企劃調整局文化擔當
北九州	文化課	
福岡	文化課 埋藏文化財課	

郡.道.縣 吳 政令指定都市 文化行政擔當職員數

(1986年 5月 1日 現在)

地方公共團體		區分	總務・庶務	藝術文化	文化財保護	計
郡 道 府 縣	教 委 員 會	本 廳	455	168	732(443)	1,355(443)
		附屬機關	920	767	1,099(711)	2,786(711)
	知 部 事 局	本 廳	241	141	1(0)	383(0)
		附屬機關	440	402	7(1)	849(1)
	小 計		2,056	1,478	1,839(1,155)	5,373(1,155)
政 令 指 定 都 市	教 委 員 會	本 廳	31	63	110(66)	204(66)
		附屬機關	214	309	104(45)	627(45)
	市 部 長 局	本 廳	51	40	18(4)	109(4)
		附屬機關	195	265	69(40)	538(49)
	小 計		491	677	302(155)	1,479(164)
計		2,547	2,155	2,141(1,310)	6,852(1,319)	

나.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예산현황(豫算現況)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에 소요(所要)되는 경비(經費)를 부담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특별회계(文化財管理特別會計)를 설치(設置) 운영(運營)하게 되었다. 1963年 10月 21日 제정(制定) 공포(公布)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은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舊皇室財産管理特別會計法)을 승계(承繼)하여 우리나라 문화재(文化財)의 보호관리(保護管理)와 취득·조사·연구·공개·전시·선전활동(取得·調査·研究·公開·展示·宣傳活動) 등은 물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과 그 소속기관(所屬機關)의 유지·운영(維持·運營)에 필요(必要)한 경비(經費)까지도 떠 맡게 된 것이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 第5條), 이 회계(會計)의 세입(歲入)으로는 5대궁(五大宮) 및 능(陵) 관람료(觀覽料), 소속재산(所屬財産)(구황실재산(舊皇室財産)) 사용료·임대료·기금이자(使用料·賃貸料·基金利子) 및 기타수입(其他收入)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의 귀중(貴重)한 문화유산(文化遺産) 보존관리(保存管理)의 실질적(實質的)인 경비(經費)를 구황실재산(舊皇室財産)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매각대(土地賣却代)와 5대궁(五大宮) 입장료(入場料)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특회계(文特會計)의 세입(歲入)은 한계(限界)에 달한 반면 문화재보존관리비(文化財保存管理費)의 수요(需要)는 급격히 증가(增加)하여 급기야는 1969년도(年度)부터는 문화재보수비(文化財補修費) 일부(一部)를 일반회계(一般會計) 및 경제개발특별회계(經濟開發特別會計)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문특회계규모(文特會計規模)에 比하여 일반회계지원규모(一般會計支援規模)가 상대적(相對的)으로 늘어나 문특회계(文特會計) 존립(存立)의 의의가 없게되어 문특회계(文特會計)의 폐지(廢止)를 검토(檢討)하게 되었고 드디어 1989년부터는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에 소요(所要)되는 모든 경비(經費)를 일반회계(一般會計)에 계상(計上)하고 문특회계(文特會計)를 폐지(廢止)하는 법률안(法律案)이 관계기관(關係機關)의 협의(協議)를 거쳐 국회(國會)에 상정(上程) 통과(通過) 단계에 있게 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을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데 있어 예산제도면(豫算制度面)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다. 문화재(文化財) 보수실적(補修實績)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는 그 업무(業務)의 성격상(性格上) 자료수집·조사연구·분류정리·보존·활용(資料蒐集·調查研究·分類整理·保存·活用)의 단계로 구분시행(區分施行)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자료수집(資料蒐集)은 일선행정기관(一線行政機關)으로부터의 보고(報告) 또는 소유자·관리자(所有者·管理者)로부터의 자의적인 제공(提供)이나 각종(各種) 신고(申告) 등에 의한 소극적(消極的)인 방법(方法)과 문화재담당자(文化財擔當者)가 발굴(發掘)하여 수집(蒐集)하는 적극적(積極的)인 방법(方法)이 있다. 문화재지정신청(文化財指定申請)이나 수리요청·매장문화재(修理要請·埋藏文化財) 발견신고(發見申告) 등은 전자(前者)에 속하고 문화재지표조사(文化財地表調査), 발굴조사(發掘調査), 실태조사(實態調査) 등은 후자(後者)에 속한다. 어느 경우나 정확한 자료(資料)가 충분(充分)히 수집(蒐集)되어야 다음 단계인 조사연구자료(調查研究資料)로서 활용(活用)할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조사연구(調查研究) 단계에서는 수집(蒐集)된 자료(資料)를 역사적(歷史的), 학술적(學術的), 예술적가치(藝術的價値) 유무(有無)와 충분(充分)한 고증(考證)을 거쳐 가치판단(價値判斷)을 하는 과정(過程)이다.

이 과정에는 분야별(分野別) 전문가(專門家)가 참여(參與)하여야 한다. 문화재지정조사(文化財指定調査), 문화재보수지침조사(文化財補修指針調査) 등이 이 과정에 속한다. 세제로 분류정리(分類整理)단계는 조사연구(調査研究)된 문화재(文化財)를 보존관리대상(保存管理對象)으로 분류(分類)하여 기록유지(記錄維持)하게 된다. 문화재종류별(文化財種類別)로 지정(指定)하여 기록(記錄)카드화(化)하고 수리(修理)할 것 보존처리(保存處理)할 것 등으로 정리(整理)하여 다음 단계인 보존관리(保存管理) 방안(方案)에 대한 자료(資料)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재(文化財)는 원형(原形)대로 보존(保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나 오랜 역사(歷史)속에 퇴락되고 훼손되고 탈락되는 등 원형(原形)에 손상이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의 필요(必要)가 있는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라 함은 보수·복원(補修·復元) 및 이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設計)와 손상(損傷)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시행령(施行令) 第6條). 여기서 복원(復元)의 의무(義務)를 완전(完全)히 없어진 것을 새로 모방하여 신조(新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부분적인 탈락을 보충하여 원형(原形)을 복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재(文化財)를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일 중의 많은 부분이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가 차지함은 여기에는 많은 예산(豫算)이 소요(所要)될 뿐 아니라 고도(高度)의 기술(技術)과 문화재(文化財)를 아끼는 확고한 정신(精神)과 인내가 필요(必要)한 것이다. 아무리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일지라도 사장(死藏)된 문화재(文化財)는 그 가치(價値)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단계인 활용(活用)의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가치관(價値觀)이 정립(定立)된 문화재(文化財)는 전시·보급(展示·普及)을 통(通)하여 사회교육자료(社會教育資料)로 활용(活用)됨으로써 비로소 그 진가(眞價)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전시(文化財展示) 방안(方案)은 시대·장소·종류(時代·場所·種類)를 초월하여 다양(多樣)한 문화재(文化財)를 박물관(博物館)에 전시(展示)하는 방법(方法), 특정(特定)한 장소(場所)에 특별(特別)히 한정(限定)된 문화재(文化財)를 전시(展示)하는 방법(方法) 즉 지역역사관(地域歷史館), 인쇄박물관(印刷博物館), 고분전시관(古墳展示館) 등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이 여기에 속한다. 부동산문화재(不動產文化財)인 경우 그 자체(自體)를 공개(公開)하거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인 경우 발표공연(發表公演)을 하는 것 등도 문화재(文化財) 활용(活用)에 속하는 일이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의 제과정(諸過程) 중에서 가장 비중(比重)을 많이 차지하는 문화재보수부문(文化財補修部門)을 연도별(年度別)로 대비(對比)하여 봄으로써 그 동안의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의 일면(一面)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대비기간(對比期間)은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이 1961年 10月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설치(設置)로 인하여 독립기관(獨立機關)에 맡겨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1963년도(年度)를 기점(起點)으로 하였으며 연도별(年度別)로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민속자료(國寶·寶物·史蹟·天然記念物·民俗資料) 및 기타(其他)의 사업(事業) 건수(件數)와 지방지정문화재(地方指定文化財) 및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의 보수사업(補修事業) 건수(件數)로 분류(分類)하였으며 투입예산(投入豫算)은 국비(國費)(보조사업(補助事業) 및 직영사업포함(直營事業包含))·지방비(地方費)·자체부담액(自體負擔額)으로 구분(區分)하였다. 1945年 해방(解放)後부터 1962年度까지도 문화재보수사업(文化財補修事業)이 부분적으로 시행(施行)되었을 것이나 자료(資料)의 미비로 부득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발족(發足)한 이후(以後)로 기준(基準)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以前)에도 국보(國寶) 第1號인 남대문보수(南大門補修)를 1961年 5월에 착수(着手)하여 완전해체보수(完全解體補修)하는 등 문화재보수사업(文化財補修事業)은 꾸준히 시행(施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年度에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26件과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 6件 합계(合計) 32件에 3千4百萬원의 예산(豫算)이 투입(投入)되었다. 사업건수(事業件數)와 예산(豫算)은 비록 보잘 것 없으나 국보(國寶) 第1號인 서울남대문(南大門) 해체보수(解體補修)를 마무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석굴암(石窟庵) 보수(補修) 등 주요문화재(主要文化財) 보수사업(補修事業)을 시행(施行)하였다. 60年代에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단위문화재보수(單位文化財補修)에 중점(重點)을 두었으나 예산(豫算)과 사업(事業)의 전체규모(全體規模)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사업(事業)의 數에 있어서나 투입예산(投入豫算)의 규모면(規模面)에서 획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준다. 이 시기(時期)부터는 일반회계(一般會計)(경특(經特))의 지원(支援)이 두드러지게 많아졌고 특히 지방비(地方費) 투입(投入)이 현격히 증가되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에 관심(關心)을 많이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977年度부터 국비지원(國費支援)이 급격히 늘어나 30億원을 넘어선 것은 그 당시 故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前大統領)이 국난(國難)의 위기(危期)에 처(處)하여 나라위해 몸을 바친 호국선현(護國先賢)의 유적(遺跡) 보수정화사업(補修淨化事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예산지원(豫算支援)에 배려했기 때문이다. 각처(各處)에 있는 이충무공(李忠武公) 유적(遺跡)이 정비(整備)되고 강화전적지(江華戰蹟地), 수원성(水原城) 보수정비(補修整備) 등 數많은 국난극복(國難克服)의 현장(現場)이 보수(補修)된 것이 이 시기(時期)를 전후(前後)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문화재보수사업(文化財補修事業)이 사업면(事業面)이나 예산면(豫算面)에서 급격히 줄었다. 이는 '77~'79 3個年間に 문화재보수사업(文化財補修事業)에 집중투입(集中投入)한 것에도 원인(原因)이 있겠지만 第5공화국(共和國) 초기(初期), 정치·경제(政治·經濟)의 혼란에도 그 원인(原因)의 일부(一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83年度부터는 다시 연도별(年度別)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全般的)으로 볼 때 문화재보존관리사업(文化財管理事業)은 점차 물량면(物量面)에서나 예산면(豫算面)에 있어서 증가(增加)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비(地方費) 및 자체부담(自體負擔) 비율(比率)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온 국민(國民)의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관심도(關心度)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도별(年度別) 문화재보수실적표(文化財補修實績表)

區分 年度別	國家指定文化財							地方文化財			計	叡算(單位:百萬元)			計
	國寶	寶物	史蹟	天然記念物	民俗資料	其他	小計	地方指定	非指定	小計		國費	地方費	自体	
1963	6	11	8	1			26		6	6	32	26	8		34
1964	8	10	10	25			53		15	15	68	49			49
1965	5	12	7	2			26		31	31	57	32			32
1966	7	24	11	20		1	63		89	89	152	92		7	99
1967	3	13	10			2	28		50	50	78	86	5	6	97
1968	4	11	8	13		1	37				37	106			106
1669	10	20	5	26	2	1	64		87	87	151	141	17	8	166
1970	9	19	14	17			59		147	147	206	305	96	9	410
1971	13	56	25	12		2	108		170	170	278	604	133	41	778
1972	7	19	19		1	1	47		51	51	98	632	41	16	690
1973	8	49	21	12	1	3	94	14	73	87	181	504	408	85	997
1974	10	33	22	7	2	1	75	51	136	187	262	1,563	524	115	2,202
1975	6	32	18	9	3		68	29	36	65	133	1,367	333	50	1,750
1976	4	14	23	4	3	7	55	24	24	48	103	1,800	915	41	2,756
1977	5	13	21	11	3	6	59	33	26	59	118	3,190	2,240	30	5,460
1978	5	51	36		1	3	97	136	87	223	320	5,590	4,903	241	10,734
1979	11	29	43	20	15		118	136	111	247	365	6,476	6,182	229	12,887
1980	3	17	31	18	9	1	79	26	32	58	137	4,037	3,815		7,852
1981	14	37	31	11	5	5	103	147	116	263	366	4,170	6,628	1,022	11,820
1982	8	35	54	38	12	1	148	182	63	245	393	5,082	5,633	1,349	12,064
1983	13	33	63	50	14	2	175	203	66	269	444	6,223	6,110	755	13,088
1984	20	54	49	52	13	2	190	285	67	352	542	5,358	8,620	1,712	15,690
1985	13	48	43	45	19	3	171	248	72	320	491	4,174	8,196	1,152	13,522
1986	16	45	73	34	26	5	199	323	94	417	616	10,657	83,489	1,140	45,286

4. 문화재관리 행정(文化財管理行政) 개선(改善)을 위한 시책방향(施策方向)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행정(行政)을 맡고 있는 실무자(實務者)로서 그동안 업무(業務)를 통하여 취득한 잠재(潛在)된 문제점(問題點)에 대한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기구(機構)

앞에서도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기구(文化財管理機構)는 중앙기관(中央機關)으로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있고 지방행정기관(地方行政機關)으로는 시·도(市·道)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내(文化公報擔當官室內) 문화재계(文化財係) 시·군(市·郡)에는 문화공보실내(文化公報室內) 1개과(個課)(명칭(名稱)은 문화계·문화재계(文化係·文化財係) 관광계(觀光係) 등 다양(多樣)함에서 담당(擔當)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으로서의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은 2급기관장(級機關長)으로서 700여명(餘名)의 조직(組織)을 관리(管理)하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지휘감독(指揮監督)하기에는 조직관리상(組織管理上) 불합리(不合理的)하다. 그리고 이

질적(異質的)으로 다양(多樣)한 문화재관리기능(文化財管理機能)을 문화재(文化財)1課~2課의 2개과(個課)에서 담당(擔當)하는 것도 행정기능상(行政機能上)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은 업무량(業務量)에 맞게 확대개편(擴大改編)되어야 할 것이고, 하부조직(下部組織)도 문화재(文化財)의 성질(性質)에 맞도록 적어도 건조물문화재·사적문화재·천연기념물문화재·동산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建造物文化財·史蹟文化財·天然記念物文化財·動産文化財·無形文化財·民俗文化財)로 분리(分離)하여 과단위(課單位)로는 독립(獨立)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기관(地方行政機關) 즉 시·도(市·道), 시·군(市·郡)에는 문화재(文化財)를 전담(專擔)하는 과단위(課單位)의 기구(機構)는 있어야 늘어나는 문화재행정(文化財行政)의 수요(需要)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기능(機能)을 확대(擴大)하여 신라·백제·가야문화(新羅·百濟·伽倻文化)가 집중(集中)된 지역(地域)에는 연구소(研究所) 분소(分所) 또는 직할기관(直轄機關)을 두어 발굴조사(發掘調査) 및 보존업무(保存業務)를 직접(直接) 담당(擔當)해야 할 것이다.

나. 문화재 관리(文化財管理) 전문인력(專門人力) 양성(養成)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은 일반행정(一般行政)과 달리 전문분야(專門分野)를 이해(理解)하고 오랜 경험(經驗)과 상당한 상식(常識)과 사명감(使命感)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일부(一部) 학예직(學藝職)이나 기술직(技術職)을 제외하고는 수시로 이동(移動)될 수 있는 현행제도(現行制度)는 행정(行政)이 전문화(專門化)될 수 없다.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함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번 잃은 문화재(文化財)는 어떠한 방법(方法)으로도 다시 재생(再生)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국(日本國)과 같이 문화재보호직(文化財保護職) 등 직렬(職列)를 따로 둬서 바람직하다. 이는 해마다 수 많이 배출되는 대학(大學)의 역사학(歷史學), 고고학(考古學), 인류학(人類學) 등 전공학생에게 희망(希望)을 갖게 하는 역할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예산회계제도(豫算會計制度)

정부(政府) 예산회계제도(豫算會計制度)에 의하면 예산단년주의(豫算單年主義)를 채택(採擇)하고 있어 모든 사업(事業)은 당해 연도내(年度內)에 시작(始作)하여 끝내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있다. 물론(勿論) 사업(事業)을 이월(移越)하여 시행(施行)하는 방법(方法)도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例外) 규정(規程)에 지나지 않으며 이월(移越) 또한 한 번 이상은 불가(不可)하기 때문에 문화재보수공사(文化財補修工事)와 같이 공사기간(公事期間)이 장기간(長期間) 소요(所要)되는 사업(事業)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發生)한다. 문화재(文化財) 보수(補修)는 철저한 고증(考證)과 보수방법(補修方法)을 사전(事前)에 연구(研究)하여 시행(施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施行) 중에 새로운 사실(事實)이 발견(發見)되어 이를 조사(調査)하여 구명(究明)하는 데는 많은 시간(時間)과 경비(經費)가 추가(追加)되는 수도 있게 마련이다. 고건물(古建物) 하나를 보수(補修)하기 위하여는 우선 외형적(外形的)으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따라 보수설계(補修設計)를 하여 공사(工事)를 발주시행(發注施行)하게 되는데 이 기간(期間)도 짧게는 2~3개월(個月) 걸리고 길게는 4~5개월(個月) 걸리게 된다. 그

러나 공사시행(工事施行)中 건물(建物)을 해체(解體)하여 보면 외형(外形)과는 여러가지 사실(事實)이 나타나게 된다. 상량문(上樑文)이 발견(發見)되어 그 건물(建物)의 역사(歷史)가 조사(調査)된 내용(內容)과 다른 경우도 있고, 목재(木材)의 부식(腐蝕)이 심하여 설계변경(設計變更)을 하는 등 많은 기간(期間)이 소요(所要)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다. 문화재(文化財)를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일 중에는 이러한 과정(過程)이 꼭 필요(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보수사업비집행(文化財補修事業費執行)에는 예산회계규정(豫算會計規程)에 예외규정(例外規程)을 두어 충분(充分)한 시간(時間)과 예산(豫算)을 투입(投入)하여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보존(保存)하는데 시간(時間)과 경비(經費)의 부족(不足)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문화유적발굴(文化遺蹟發掘)

문화유적(文化遺蹟)의 발굴(發掘)은 새로운 학술자료(學術資料)를 찾아 역사(歷史)의 실체(實體)를 구명(究明)하는 작업(作業)으로서 학문적(學問的)으로 매우 중요(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발굴(發掘) 그 자체(自體)는 문화재(文化財) 원형보존(原形保存)의 원칙상(原則上) 유적(遺跡)을 파괴(破壞)는 결과(結果)를 초래하는 것이다. 수천년(數千年) 혹은 수백년간(數百年間) 땅 속에서 보존(保存)되어온 문화유적(文化遺蹟)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보존방법(保存方法)이다. 따라서 유적(遺跡)은 원칙적(原則的)으로 발굴(發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第44條)

다만 학술연구(學術研究)의 목적(目的)이나,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시행(施行)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예외적(例外的)으로 허용(許容)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자료(歷史資料)를 찾고 학문(學問)의 발전(發展)을 위하여 발굴(發掘)의 필요성(必要性)은 날로 증대(增大)되어 가고 있으며, 근대(近代) 산업(產業)의 발달(發達)에 다른 국토개발(國土開發)을 위한 대대적(大大的)인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시행(施行)으로 유적발굴(遺蹟發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건설(高速道路建設), 댐건설(建設) 등으로 지역적(地域的)인 종합발굴작업(綜合發掘作業)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화재(文化財)를 발굴(發掘)하는 것은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대수술(大手術)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경험(經驗)이 많은 전문가(專門家)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출토(出土)되는 유물(遺物)의 과학적(科學的) 보존(保存), 유구(遺構)의 정밀(精密)한 기록(記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파괴(破壞)되기 쉬운 금속류(金屬類), 지류(紙類), 섬유류 등은 외기(外氣)에 접(接)하면 쉽게 변(變)하게 되어 자칫 시기(時期)를 놓치거나 보존과학기술(保存科學技術)이 미비(未備)하면 모처럼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을 파괴(破壞)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유적발굴(遺蹟發掘)에는 발굴시기(發掘時期)도 또한 중요(重要)하다. 고온다습(高溫多濕)한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나 땅이 어는 겨울철은 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적발굴조사현황(文化遺蹟發掘調查現況)은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발굴(發掘)을 전문(專門)으로 하는 연구기관(研究機關)이나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보존처리(保存處理) 전문기관(專門機關)이 없는 실정(實情)이다. 발굴(發掘)은 대부분(大部分) 대학박물관(大學博物館)이 담당하고 있어 주로 학교방학기간(學校放學期間)을 이용(利用)하여 발굴(發掘)함으로써 여름이나 겨울에 발굴(發掘)하게 되어 발굴시기(發掘時期)로는 가장 나쁜 때에 하게 된다. 출토유물보존처리(出土遺物保存處理)는 다양(多樣)한 유물(遺物)을 과학적(科學的)으로 처리(處理)하기 위하

여는 정밀(精密)한 각종기재(各種機材)와 고도(高度)로 숙련된 전문가(專門家)가 있어야 한다. 현재(現在) 우리나라 실정(實情)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보존과학연구실(保存科學研究室)과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및 몇개의 대학(大學)을 제외하고는 발굴유물(發掘遺物)에 대한 보존처리(保存處理)를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에 맡기고 있으나 시설(施設)과 인력부족(人力不足)으로 수요(需要)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발굴기관(專門發掘機關)과 매장문화재보존처리(埋藏文化財保存處理)를 전담(專擔)하는 기관(機關)이 많이 설치(設置)되어 이 일을 담당(擔當)하여야 할 것이다.

연도별 발굴기관현황(46~88)

(‘88. 11. 현재)

년도별	발굴건수	기 관 별		년도별	발굴건수	기 관 별	
		대학박물관	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등			대학박물관	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등
46	2		2	70	14	6	8
47	1		1	71	13	6	7
49	1		1	72	20	14	6
52	2		2	73	26	14	12
53	3		3	74	30	14	16
55	1		1	75	41	29	12
56	1		1	76	23	14	9
57	5	1	4	77	38	25	13
58	2	1	1	78	32	24	8
59	5	3	2	79	26	16	10
60	3	2	1	80	35	16	19
61	5	4	1	81	30	15	15
62	6	1	5	82	57	41	16
63	14	6	8	83	66	52	14
64	19	10	9	84	55	40	15
65	21	6	15	85	40	25	15
66	19	7	12	86	36	25	11
67	17	10	7	87	44	28	16
68	15	6	9	88	41	28	13
69	24	12	12	계	833	501	332

마. 문화재 관리(文化財管理)의 사회교육기능(社會教育機能)

문화재(文化財)를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궁극적인 목적(目的)은 조상(祖上)이 남긴 문화유산(文化遺産)을 원형(原形)대로 보존(保存)하여 전시활용(展示活用)함으로써 사회교육적(社會教育的) 기능(機能)을 하고 이를 후세(後世)에 잘 물려 주는 것이다. 각종(各種) 박물관(博物館)을 건립(建立)하여 유물(遺物)을 전시(展示)하고 주요(主要) 유적지(遺蹟地)에 보호시설(保護施設)을 하여 공개(公開)하고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인 경우는 발표공연(發表公演)을 통하여 우리 고유문화(固有文化)를 소개(紹介)하는 것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문화재(文化財)는 생성(生成)된 시대(時代)와 주위환경(周圉環境)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文化財)는 그 현장(現場)에 있음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즉 신라문화재(新羅文化財)는 경주(慶州)에, 백제문화재(百濟文化財)는 부여(扶餘)나 공주(公州) 등 그 생성(生成)된 곳에 있어야 살아 숨쉬는 산 역사자료(歷史資料)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地域) 중심(中心)의 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도 필요(必要)하겠지만 역사(歷史)의 현장(現場)에 유물관(遺物館), 자료관(資料館), 역사관(歷史館), 기념관(紀念館) 등의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을 많이 건립(建立)하여 역사(歷史)의 산 교육장(教育場)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1988년에 조성완료(造成完了)한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전시관(岩寺洞先史住居地展示館), 강화역사관(江華歷史館) 등이 이에 속하며 지금 계획추진(計劃推進) 중인 청주흥덕사지인쇄문화전시관(淸州興德寺址印刷文化展示館) 신안해저유물전시관(新安海底遺物展示館) 등이 모두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의 성격(性格)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백제문화권정비지역(百濟文化圈整備地域)에 백제역사관(百濟歷史館), 경주황룡사지(慶州皇龍寺址) 및 익산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 등 주요유적발굴지(主要遺跡發掘地)에 유물관(遺物館)을 건립(建立)하고 면화시배지(棉花始培地)에 면화기념관(棉花紀念館)을 건립(建立)하는 등 역사(歷史)의 현장(現場)에 특성(特性)에 따른 특수박물관(特殊博物館)을 곳곳에 건립(建立)하여 관광권(觀光圈)과도 연계하여 국민(國民)의 산 교육장(教育場)으로 조성(造成)하여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이야말로 가장 복잡(複雜)한 종합행정(綜合行政)이다. 흔히 문화재관리행정(文化財管理行政)은 골동품이나 다루고 옛 것이나 찾는 고루하고 케케묵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매도되기 쉽다. 그러나 현대(現代)의 문화재행정(文化財行政)은 고고학(考古學), 역사학(역사학), 민속학(民俗學), 음악(音樂), 미술(美術), 무용(舞踊), 공예기술분야(工藝技術分野) 뿐만아니라 토목(土木), 건축(建築), 조경(造景) 등 기술분야(技術分野), 동물·식물(動·植物), 광물(鑛物) 및 환경공학분야(環境工學分野)도 밀접한 관련(關聯)이 있으며 문화재(文化財)의 과학적보존(科學的保存)을 위해서는 물리(物理), 화학(化學) 원자력(原子力) 등 첨단과학(尖端科學)까지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이와같이 문화재행정(文化財行政)은 이 모든 전문분야(專門分野)가 오케스트라연주와 같이 가장 잘 조화(調和)를 이룰 때 이상적(理想的)인 문화재보존관리(文化財保存管理)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國民所得) 3천불(千佛) 이상(以上)의 경제적(經濟的)인 중진국(中進國)에 들어선 이 때에, 더욱 올림픽을 성공적(成功的)으로 개최(開催)한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문화재보존분야(文化財保存分野)에도 특단(特斷)의 정책적(政策的)인 배려로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할 때라고 본다.

소극적(消極的)인 관리(管理)에서 적극적(積極的)인 보존관리체제(保存管理體制)로 임시적(臨時的)인 응급조치(應急措置)에서 항구적(恒久的)인 보존대책(保存對策)으로 재래식(在來式) 보존처리(保存處理)에서 첨단과학(尖端科學)을 통한 방법(方法)으로 문화재(文化財)의 집중관리(集中管理)에서 역사(歷史)의 현장(現場) 교육도장화(教育道場化)로 조성(造成)하기 위하여는 분야별(分野別) 전문인력(專門人力)을 양성(養成)하고 행정수

요(行政需要)에 상응하는 중앙(中央)과 지방(地方)의 문화재 행정기구(文化財行政機構)를 확장(擴張)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 전시공간(文化財展示空間)을 확충(擴充)하여 문화(文化)의 혜택이 지역간(地域間)에) 균배(均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문화재도굴(文化財盜掘)이 성행하고 도굴문화재(盜掘文化財)가 장물(贓物)로 거래(去來)되고 있는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서의 불명예(不名譽)를 씻기 위하여는 국민(國民)의 문화재애호정신(文化財愛護精神)을 고취하여 스스로가 모두 감시원이 되도록 계몽활동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새가 즐겨찾는 바다를 매립하여 공장(工場)을 건립(建立)함으로써 자연생태계(自然生態系)를 파괴(破壞)하고 아름다운 산야(山野)를 무계획적(無計劃的)으로 개간하여 자연환경(自然環境)을 오염시켜 철새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수목(樹木)이 고사하는 생태계가 된다면 우리 인간(人間)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자연(自然)은 파괴(破壞)하기는 쉽지만 한 번 훼손된 자연(自然)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生活)터전이 되는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自然環境)도 조상(祖上)이 물려준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와 함께 길이 보존(保存)하여야 할 것이다.